새천년의료상해보험

1. 보고이유서

불확실한 시대에 불의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경제력 상실에 대한 불안감, 특히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는 실제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당사는 일상생활중의 상해는 물론 특정질병이 아닌 전체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해주어 가정경제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덜어줌은 물론 손해보험사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새천년의료상해보험을 신설, 판매하고자 보고합니다.

보험계리인 확인서

보험업법 제 203조에 의거 본 보고안의 기초서류에 관련된 계수가 정당하게 계산되었음을 확인함.

1999. . .

보험계리인 제 59호 김 응 호 (인)

2. 장기상해보험 사업방법서 변경내용

장기상해보험 사업방법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아 래 —

제 4조 (보험의 종류)

① 보험의 종류는 원보험과 재보험으로 한다.

② 원보험의 보통약관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 41. 생 략

42. 새천년의료상해보험(신 설)

제 21조 (특약의 종류)

① ~ 생 략

새천년의료상해보험의 보통약관에 첨부할 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은 아래와 같다.

1. 상해의료비담보 특별약관
2. 병실료지원금담보 특별약관
3. 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4. 암진단급여금담보 특별약관
   가. 상피내암진단급여금담보 추가특별약관
5.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6. 골프용품손해담보 특별약관
7. 홀인원비용담보 특별약관
8. 골프 중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9. 피보험자확장담보 특별약관
10. 단체취급 특별약관
1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1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3. 장기상해보험 사업방법서 변경대비표

현 행	변 경	비 고
제 4조 (보험의 종류) ① 보험의 종류는 원보험과 재보험으로 한다. ② 원보험의 보통약관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 41. 생 략	제 4조 (보험의 종류) ① 보험의 종류는 원보험과 재보험으로 한다. ② 원보험의 보통약관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 41. 생 략 42. 새천년의료상해보험 보통약관	신 설
제 21조 (특약의 종류) ① ~ 생 략	제 21조 (특약의 종류) ① ~ 생 략 새천년의료상해보험의 보통약관에 첨부할 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은 아래와 같다. 1. 상해의료비담보 특별약관 2. 병실료지원금담보 특별약관 3. 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4. 암진단급여금담보 특별약관 가.상피내암진단급여금담보추가특별약관 5.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6. 골프용품손해담보 특별약관 7. 홀인원비용담보 특별약관 8. 골프 중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9. 피보험자확장담보 특별약관 10. 단체취급 특별약관 1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1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신 설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체결

1.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우 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 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 보 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며,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보험료 산출시 적용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 연 8% > 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 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4.에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 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 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서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

①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청약서(이하『청약서』라 합니다.) 부본 및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회사가 위 ①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3.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4.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 1회 보험료를 받기전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위 ②의 보험료는 3.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 (이하『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이하『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무면허 운전(면허시험장내에서 면허시험중에 입은 상해는 보상하

여 드립니 다.) 또는 음주운전

⑤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⑥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 담하는 위험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⑧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 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⑪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 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 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항로(정기편이나 부정기편을 묻지 아니합니다.)의 항공기가 아닌 다른 항공 기를 조종하는 동안

④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 승하고 있는 동안

6.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7. (모집인등의 청약서 임의기재행위의 효력)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자필서명란의 필적 또는 날인 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 또는 날인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계약체결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경우 계 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8.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위 ①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9. (청약의 철회)

①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 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한하여 계 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우편 철회의 경우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 7%>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

10. (계약후 알릴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②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계약을 맺을 때
③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때.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붙여야 합니다.
④ 피보험자를 변경할 때.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위 ①의 ①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단,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위 ③과 같습니다.

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

항은 일반적으로 도 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1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② 피보험자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12.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 를 얻지 아니한 경우

13. (보험료 납입방법)

① 보험료의 납입방법은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6개월납, 3개

월납. 2개 월납 또는 월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제 2회부터의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중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료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위 ②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 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합니 다.

④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 연7% >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시에 할인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14.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③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위 ①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15. (해지계약의 부활)

①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부활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이 보험의 예정이율에 1%를 더한 이율〈연 8%〉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 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우 4. 및 6.의 규정을 다시 적용합니다.

16. (보험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 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기재사항 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때
② 10.의 ①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① 회사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위 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 다.
② 위 ②의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 1】에 정한 해지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위 ②의 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10.의 ③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손해가 위 ②의 ①, ②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위 ②, ③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7. (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① 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경과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이외의 사유로 무효 또는 해지(29.의 ①의 경우를 제외합니다)가 된 경우에는 【별표 1】에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8.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적립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의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보험료납입경과기간까지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7%>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19. (환급금등의 이자지급)

① 회사는 17.의 ② 및 18.의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 +0.5% <연7.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위 ①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손해의 발생

20. (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위 ①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 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1.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 (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등 인근 주민의 확인 서)

③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구분	1종	2종
주말일반상해	보험가입금액의 1배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의 1배 해당액
평일일반상해	보험가입금액의 0.5배 해당액	

손해의 보상

22.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3.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된 그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피보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으로 추정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90일 이전이라도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으로 간주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23. (후유장해 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3.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 우에는 아래의 기준금액에 【별표 2】의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1종 >
< 2종 >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구 분		기준 금액	지급 기간
주말상해	50%초과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1배	사고발생일부터 10년간 매년지급
	50%이하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1배	사고발생일 1회 지급
평일상해	50%초과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0.5배	사고발생일부터 10년간 매년지급
	50%이하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0.5배	사고발생일 1회 지급

구 분	기준 금액	지급 기간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1배	사고발생일 1회지급

후유장해 판 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별표 2】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 2】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 합니다. 다만,【별표 2】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①, ②, ③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다만,【별표 2】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 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지급율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24. (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보험금은 각각 22.와 23.에서 정한 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25.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3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 일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 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21.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손해조사 ·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리 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위 ②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6.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3.에서 정한 사고의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 향으로 또는 3.에서 정한 사고의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 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3.에서 정한 사고의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

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3.에서 정한 사고의 상해가 증대하게된 경우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27. (보험금등의 지급방법)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보험금 또는 만기환급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다음의 지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지급
②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증액하여 지급
③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이자와 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④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자만 지급한 후 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

② 위 ①의 경우,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회사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28.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 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29.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23.의 지급율이 80%이하인 손해를 보상한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23.의 지급율이 80%를 넘는 손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위 ①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18.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의 책임준비금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밖의 사항

30. (계약자 대출)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안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위 ①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 기일에 관계없이 지급할 금 액에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31.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보험금청구권과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별도의 최고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32.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 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3.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 보험종목
③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34. (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 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 (예금보험지급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36.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 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7.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특별약관

1. 상해의료비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새천년의료상해보험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1사고마다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위 ①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①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29.의 ①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 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병실료지원금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새천년의료상해보험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에서 정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 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입원 기간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병실료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입원기간
지급금액

7일이상~13일이하	14일이상~29일이하	30일이상
10만원	20만원	50만원
3일초과 입원 1일당 1만원 (180일 한도)		

② 위 ①의 질병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하며,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이 발효되어 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 1회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③ 동일한 원인 또는 관련된 원인에 의하여 여러차례 입원한 경우에는 그 상해 또는 질병의 결과로 입원하고 있지 않은 기간이 180일을 경과하지 않는 한 이를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에 의한 입원으로 봅니다.

④ 위 ①, ③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동안에 다수의 질병 또는 상해를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보상액은 위 ①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통약관 5.에 정한 사항 (단, 5.의 ⑤,⑥은 아래 ②,③으로 대체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③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성병
⑤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위 ①의 손해 외에 아래의 손해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②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③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④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이 보험계약에 의해 회사가 책임이 시작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치료, 단, 이 규정은 재계약(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해지계약의 부활)

①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부활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에 1%를 더한 이율〈연 8%〉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보통약관 1. 및 6.의 규정을 다시 적용하고,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 개시는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이 특별약관 1. ②의 책임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4. (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 는 6개월미만은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위 ①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의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연령에 의하여 계산된 것으로 보 고 이로 인해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정해진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 니다.

5.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29.의 ①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 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새천년의료상해보험**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에서 정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 (이하『의료비』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 (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료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4~6인용 병실을 말합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②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③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② 위 ①의 질병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하며,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이 발효되어 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 1회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③ 회사는 위 ①의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80%해당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료보

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①의 ①,②,③의 의료비는 각각 발생 의료비총액의 30%해당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위 ①,③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사고(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이나 상해로 2회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회사의 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아래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⑤ 위 ①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 (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④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통약관 5.에 정한 사항 (단, 5.의 ⑤,⑥은 아래 ②,③로 대체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③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성병

구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보상한도	A 형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B 형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⑤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다만, 한방병원 또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③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④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⑤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또는 사고전 상태대로의 성형수술비

⑥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병실차액,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입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⑧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이 경우에도 본인부담 의료비는 1.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⑨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책임이 시작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치료비, 단, 이 규정은 재계약(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해지계약의 부활)

①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부활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에 1%를 더한 이율〈연 8%〉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보통약관 1. 및 6.의 규정을 다시 적용하고,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 개시는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이 특별약관 1. ②의 책임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4.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29.의 ①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암진단급여금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새천년의료상해보험**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의 5.의 ①의 ⑤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중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해당액을 암진단급여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암진단급여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② 위 ①의 경우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날부터 적용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2.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위 1.에서 보상하는 “암”이라 함은 제 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3】“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별표 3】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 (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 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 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 (보험계약의 무효)

① 계약을 맺을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계약일로 부터 과거 5년이내 또는 계약일로부터 책임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묻지 아니합니다.)

②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② 위 ①의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일의 전일 이전에 피보험 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사실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도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4.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위 ①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 는 6개월미만은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위 ①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의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연령에 의하여 계산된 것으로 보 고 이로 인해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정해진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 니다.

6. (해지계약의 부활)

①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부활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에 1%를 더한 이율〈연 8%〉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보통약관 1. 및 6.의 규정을 다시 적용하고,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 개시는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이 특별약관 1. ②의 책임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7.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29.의 ①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 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가. 상피내암진단급여금담보 추가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새천년의료상해보험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의 5.의 ①의 ⑤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중에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피내암진단급여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상피내암진단급여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② 위 ①의 경우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2.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위 1.에서 보상하는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 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추가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위 ①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해지계약의 부활)

①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부활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에 1%를 더한 이율〈연 8%〉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보통약관 1. 및 6.의 규정을 다시 적용하고,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 개시는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이 특별약관 1. ②의 책임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5. (보통약관 및 암진단급여금담보 특별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29.의 ①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거나 암진단급여금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4. 의 ①에 따라 특별약관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추가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암진단급여금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5.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새천년의료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5.의 ①의 ⑤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중에 사망하거나 아래의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해당액을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②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③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④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⑤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⑥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⑦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⑧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다만, 위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 현재 의 장해 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위 ①의 경우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하며,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이 발효되어 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자에게 감염되었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2. (보험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12.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계약체결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 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3. (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 는 6개월미만은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위 ①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의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연령에 의하여 계산된 것으로 보 고 이로 인해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정해진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 니다.

③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만 연령으로 계산됩니다.

4. (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위 1. 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보통약관 29.의 ①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5. (해지계약의 부활)

①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부활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에 1%를 더한 이율〈연 8%〉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보통약관 1. 및 6.의 규정을 다시 적용하고,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 개시는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이 특별약관 1. ②의 책임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6.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29.의 ①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

멸하며 회　　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 골프용품손해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외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합니다)중에 생긴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골프채, 골프가방, 그밖의 골프용구 또는 피복류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생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및 도난손해
② 우연한 사고로 골프채가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또는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해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골프용품의 사용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고의

② 골프용품에 존재하고 있는 하자, 마멸, 부식, 녹, 변색, 쥐 또는 벌레로 인한 손해
③ 분실
④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3. (골프용품손해보험금)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인 골프용품에 위 1.에 정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손해가 발생된 보험목적 시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손해가 발생된 보험목적을 수선하게 될 때에는 보험목적을 손해발생직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는데 필요한 수선비를 손해액으로 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위 ①에 정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보통약관과의 관계)

새천년의료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29.의 ①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 홀인원비용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골프경기중에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에 아래에 열거하는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특별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증정 기념품 구입비용
② 축하회 비용
③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④ 동반 캐디에 대한 축하금

2.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을 말합니다.

① 골프장 : 18홀 이상을 보유한 골프장을 말합니다.
② 골프경기 :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사용하고 동반경기자 2명 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과 기준타수(PAR) 35이상의 9홀을 정규로 라운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홀인원(Hole in One) : 각 홀에서 제1타에 의해 홀에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④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을 말합니다.
⑤ 축하회 비용 :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된 축하회 비용을 말합니다.
⑥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 홀인원의 기념으로 홀인원을 한 골프장에 심는 나무 대금을 말합니다.
⑦ 동반 캐디에 대한 축하금 : 동반 캐디에게 홀인원을 한 기념축의금으로 준 금액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의 피보험자는 골프경기를 아마튜어의 자격으로 행한 자를 말하며 골프의 경기 또는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골프용품의 사용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고의

② 골프용품에 존재하고 있는 하자, 마멸, 부식, 녹, 변색, 쥐 또는 벌레로 인한 손해

③ 분실

④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⑤ 홀인원비용손해 :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고용인을 포함합니다)경우에 그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또는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홀인원 증명서(동반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서명 ·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② 비용지급 영수증

③ 기타 필요로 하는 증거자료

6. (보통약관과의 관계)

새천년의료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29.의 ①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8. 골프중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외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휴식을 포함합니다)중에 생긴 사고(이하「골프장내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의 고의
②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④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원자핵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⑤ 위 ④이외의 방사선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② 위 ①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

① 피보험자가 제 3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②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없어짐, 손상 또는 망가진 경우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③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 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 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②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③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①의 ① 및 ②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 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위 ①의 ③의 통 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 하지 아니합니다.

4.(손해방지 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② 제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④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① 위 ①의 ① 및 ②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 을 뺍니다.

② 위 ①의 ③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③ 위 ①의 ④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 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5.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 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위 ①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 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②, ③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 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6. (배상책임손해 보험금)

① 회사는 1.에 따라 보상하는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액

다만, 변제에 의해 대위취득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②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위해 지급한 응급처치,긴급호 송 기타 긴급조치에 쓰인 비용과 사전에 서면에 의해 회사의 동의를 얻은 비용

③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따른 비용

④ 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해결을 맡은 경우, 회사에 협력을 위해서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위 ②와 ④의 비용은 보상한도액에 관계없이 전액을 지급합니 다)

② 위 ①의 ①의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위 ①의 ③의 비용은 보상 한도액의 위 ①의 ①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부담합니다.

7.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3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이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추정 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통약관 21.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손해조사·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통 지하여 드리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위 ②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

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8. (보험금의 분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 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 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 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①에 의한 지 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9.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보통약관 28. 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 니다.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 손해

10.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위①, ②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위 권을 포기합니다.

11.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29.의 ①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 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9. 피보험자확장 담보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새천년의료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 에서의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본인』이라 합니다)이외에 본인과의 관계가 다음 같은 사람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으로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① 본인의 가족

② 본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② 위 ①의 ①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만1세 이상의 동거친족 (민법 제777조)

③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만1세 이상의 별거중인 미혼자녀

③ 위 ①의 ②에서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2. (피보험자의 변경)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②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3.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29.의 ①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0. 단체취급 특별약관

1.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① 제 1종단체 (급여관계 단체) : 단체의 소속원의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관공서, 국영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등의 단체
② 제 2종단체 (법정 단체) : 제 1종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써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
③ 제 3종단체 (규약 단체) : 제 1종 및 제 2종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써 단체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단체

2. (대표자의 선정)

①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및 위 1.에서 정한 계약자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② 대표자는 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및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3. (영수증의 발급)

회사는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대표자 및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별로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4. (적용보험료)

① 계약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취급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② 보험기간중 계약자수가 감소하여 10인미만이 된 때에는 위 ①을 적용하지 아니

하며, 이후 계약자수가 증가하여 10인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위 ①을 적용합니다.

5. (계약자의 증감)

① 단체 소속원이 증가되어 계약자가 추가된 때에는 당해 계약자에 대해서도 이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② 계약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대해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6. (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에서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새천년의료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12.의 ②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 (보험료의 납입)

보험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 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2.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 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매월 회사가 정하는 날중 보험계약자가 희망하는 일자로 합니다.

3. (계약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새천년의료상해보험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1. (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는 제1회 보험료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② 위 ①의 경우에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해당계좌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2.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의 보험기간 첫날은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제 1회 보험료를 자동납입한 날로 합니다.

3. (계약후의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새천년의료상해보험 보통약관 및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 (적용범위)

①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 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초년도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위 ①의 초년도보험료에는 보통약관 15.에 의한 효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를 포함합니다.

2. (보험료의 영수)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② 우편청약의 경우에는 새천년의료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4. 및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 오후 4시를 이 보험의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접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경과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합니다.

3. (사고카드계약)

① 보험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위 ①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 지된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별표 2 】

후유장해 지급율표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율
	기준금액에 대한 %임.
1. 눈(眼)의 장해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6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4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6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20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 를 남긴 때	10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 이하)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5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2. 귀(耳)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 아 듣지 못할 때	20
4) 한 귀의 청력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할 때	5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3. 코(鼻)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5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5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율
5. 외모(얼굴 · 머리 · 목)의 추상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5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20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20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15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10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 팔의 손목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 전히 잃었을 때	50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7)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고 도의 장해를 남긴 때	40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 도의 장해를 남긴 때	20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 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20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 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10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율
12)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 해를 남긴 때	5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30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16) 한 다리가 5cm이상 짧아진 때	34
17) 한 디리가 3cm이상 짧아진 때	20 7
8. 손가락의 장해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100
2)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2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손가락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20
4)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8
5)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	10
7)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손가락 마다)	5
9. 발(가락)의 장해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2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발가락 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 마	3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율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100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75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50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25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을 때	10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42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34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6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2)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100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75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0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25 10

주)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율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율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 장해 지급율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 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 용 어 풀 이 >

1. 귓바퀴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½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⅓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추상장해란 성형수술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가. 외모의 뚜렷한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10㎝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5㎝ 이상의 조직 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나. 외모의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¼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2㎝ 이상의 조직 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½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½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½ 크기 이상의 추상

4.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0 이상의 전만증 또는 20^0 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2) 중등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0 이상의 전만증 또는 10^0 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¼ 이하로 제한 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½ 이하로 제한된 때

② 두개골과 상위경추(제 1, 2 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¾ 이하로 제한된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5.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¼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 이상의 동요 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½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 이상의 동요 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¾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 이상의 동요관 절이 있는 경우

6. 손·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7.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 발가락뼈를 잃은 경우

2) 손·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 1, 2지관절의 굴신운 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½ 이하가 되었을 때

8. 흉·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 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을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½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① 이동동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9.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 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 별표 3 】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표준질병사인분류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 신생물	C30~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0~C41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 신생물	C43~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요로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C73~C75
13.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 신생물	C76~C80
14.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C81~C96
	C97

제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 4 】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표준질병사인분류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기계의 상피내 암종	D02
4. 상피내의 흑색종	D03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D04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D05
7. 자궁경관의 상피내 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D09

제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 물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 표 5 】

수술분류표

수 술 종 류		등급
피부, 유방의 수술 (皮膚,乳房의 手術)	1. 식피술(植皮術) [25㎠ 미만은 제외함] 2. 유방절단술(乳房切斷術)	2종 2종
근골의 수술 (筋骨의 手術) [발정술(拔釘術)은 제외함]	3. 골이식술(骨移植術) 4. 골수염,골결핵 수술(骨髓炎,骨結核 手術) [농양(膿瘍)의 단순한 절개는 제외함] 5. 두개골 관혈수술(頭蓋骨 觀血手術) [비골,비중격(鼻骨,鼻中隔)은 제외함] 6. 비골 관혈수술(鼻骨 觀血手術) [비중격만곡증수술(鼻中隔灣曲症手術)은제외함] 7. 상악골, 하악골, 악관절 관혈수술 (上顎骨, 下顎骨, 顎關節 觀血手術) [치, 치육(齒,齒肉)의 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8. 척추, 골반 관혈수술(脊椎,骨盤 觀血手術) 9. 쇄골, 견갑골, 늑골, 흉골, 관혈수술(鎖骨, 肩胛骨, 肋骨, 胸骨, 觀血手術) 10. 사지절단술(四肢切斷術)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11. 절단사지재접합술(切斷四肢再接合術) [골, 관절(骨, 關節)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12. 사지골, 사지관절 관혈수술(四肢骨,四肢關節 觀血手術)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13. 근,건,인대 관혈수술(筋,腱,靭帶關血手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근염, 결절종,점액종수술(筋炎, 結節腫,粘液腫手術)은 제외함]	2종 2종 2종 1종 2종 2종 1종 2종 2종 1종 1종
호흡기, 흉부의 수술 (呼吸器, 胸部의 手術)	14. 만성부비강염근본수술(慢性副鼻腔炎根本手術) 15. 후두전적제술(喉頭全摘除術)	1종 2종

수 술 종 류		등 급
호흡기, 흉부의 수술 (呼吸器, 胸部의 手術)	16. 기관, 기관지, 폐, 흉막수술(氣管, 氣管支, 肺, 胸膜手術) [개흉술(開胸術)을 수반하는 것]	2종
	17. 흉곽형성술(胸廓形成術)	2종
	18. 종격종양적출술(縱隔腫瘍摘出術)	3종
순환기, 비의 수술 (循環器, 脾의 手術)	19. 관혈적혈관형성술(觀血的血管形成術) [혈액투석용(血液透析用) Shunt형성술(形成術)을 제외함]	2종
	20. 정맥류근본수술(靜脈瘤根本手術)	1종
	21. 대동맥,대정맥,폐동맥,관동맥수술(大動脈, 大靜脈, 肺動脈, 冠動脈手術) [개흉, 개복술(開胸, 開腹術)을 수반하는것]	3종
	22. 심막절개, 봉합술(心膜切開, 縫合術)	2종
	23. 직시하심장내수술(直視下心臟內手術)	3종
	24. 체내용(體內用) Pace Maker 매입술(埋入術)	2종
	25. 비적제술(脾摘除術)	2종
소화기의 수술 (消化器의 手術)	26. 이하선종양적출술(耳下腺腫瘍摘出術)	2종
	27. 악하선종양적출술(顎下腺腫瘍摘出術)	1종
	28. 식도이단술(食道離斷術)	3종
	29. 위절제술(胃切除術)	3종
	30. 기타의 위, 식도수술(胃, 食道手術) [개흉, 개복술(開胸, 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2종
	31. 복막염수술(腹膜炎手術)	2종
	32. 간장, 담낭, 담도, 췌장 관혈수술(肝臟, 膽囊, 膽道, 膵臟觀血手術)	2종
	33. 탈장 근본수술(脫腸 根本手術)	1종
	34. 충수절제술, 맹장봉축술(蟲垂切除術, 盲腸鋒縮術)	1종
	35. 직장탈근본수술(直腸脫根本手術)	2종
	36. 기타의 장, 장간막수술(腸, 腸間膜手術) [개복술(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2종
	37. 치루,탈항,치핵근본수술(痔瘻,脫肛,痔核根本手術) [근치(根治)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처치 단순한 치핵(痔核)만의 수술은 제외함]	1종

수 술 종 류		등급
뇨, 성기의 수술 (尿, 性器의 手術)	38. 신이식수술(腎移植手術) [수용자(受容者)에 한함]	3종
	39. 신장, 신우, 뇨관, 방광 관혈수술(腎臟, 腎盂, 尿管, 膀胱觀血手術) [경뇨도적조작(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2종
	40. 뇨도협착 관혈수술(尿道狹窄 觀血手術) [경뇨도적조작(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2종
	41. 뇨루폐쇄 관혈수술(尿瘻閉碎 觀血手術) [경뇨도적조작(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2종
	42. 음경절단술(陰莖切斷術)	3종
	43. 고환 부고환 정관 정색 정낭 전립선수술 (睾丸 副睾丸 精管 精索 精囊 前立腺手術)	2종
	44. 음낭수종 근본수술(陰囊手腫 根本手術)	1종
	45. 자궁광범전적제술(子宮廣汎全摘除術) [단순자궁전적(單純子宮全摘)등의 자궁전적제술(子宮全摘除術)은 제외함]	3종
	46. 자궁경관형성술,자궁경관봉축술(子宮頸管形成術, 子宮頸菅縫縮術)	1종
	47.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1종
	48. 자궁외 임신수술(子宮外 姙娠手術)	2종
	49 자궁탈, 질탈수술(子宮脫, 膣脫手術)	2종
	50. 기타의 자궁수술(子宮手術) [자궁경관 Polyp절제술,인공임신중절술(子宮頸管 Polyp 切除術, 人工姙娠中絶術)은 제외함]	2종
	51. 난관, 난소 관혈수술(卵管, 卵巢 觀血手術) [경질적조작(經膣的操作)은 제외함]	2종
	52. 기타의 난관, 난소수술(卵管,卵巢手術)	1종
내분비기의 수술 (內分泌器의 手術)	53. 하수체종양적제술(下垂體腫瘍摘除術)	3종
	54. 갑상선수술(甲狀腺手術)	2종
	55. 부신전적제술 (副腎全摘除術)	2종

수 술 종 류		등급
신경의 수술 (神經의 手術)	56. 두개내 관혈수술(頭蓋內 觀血手術)	3종
	57. 신경관혈수술(神經觀血手術) [형성술, 이식술, 절제술, 감압술, 개방술, 염제술(形成術, 移植術, 切除術, 減壓術, 開放術, 念際術)]	2종
	58. 관혈적척수종양적출수술(觀血的脊髓腫摘出手術)	3종
	59. 척수경막내외 관혈수술(脊髓硬膜內外血手術)	2종
감각기, 시기의 수술 (感覺器,視器의 手術)	60. 안검하수증수술(眼瞼下垂症手術)	1종
	61. 누소관형성술(淚小管形成術)	1종
	62. 누낭비강문합술(淚囊鼻腔吻合術)	1종
	63. 결막낭형성술(結膜囊形成術)	1종
	64. 각막이식술(角膜移植術)	1종
	65. 관혈적전방, 홍채, 초자체, 안와내이물제거술(觀血的前房, 虹彩, 硝子體, 眼窩內異物除去術)	1종
	66. 홍채전후유착박리술(虹彩前後癒着剝離術)	1종
	67. 녹내장 관혈수술(綠內障 觀血手術)	2종
	68. 백내장,수정체 관혈수술(白內障,水晶觀 觀血手術)	2종
	69. 초자체 관혈수술(硝子體 觀血手術)	1종
	70. 망막박리증수술(網膜剝離症手術)	1종
	71. Laser.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수술(眼球手術)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1종
	72. 안구적제술, 조직충전술(眼球摘除術,組織充塡術)	2종
	73. 안와종양적출술(眼窩腫瘍摘出術)	2종
	74. 안근이식술(眼筋移植術)	1종
감각기,청기의 수술 (感覺器,聽器의 手術)	75. 관혈적고막,고실형성술(觀血的鼓膜,鼓室形成術	2종
	76. 유양동삭개술(乳樣洞削開術)	1종
	77. 중이근본수술(中耳根本手術)	2종
	78. 내이 관혈수술(內耳 觀血手術)	2종
	79. 청신경종양적출술(聽神經腫瘍摘出術)	3종

수 술 종 류		등급
악성신생물의 수술 (惡性新生物의 手術)	80. 악성신생물근치수술(惡性新生物根治手術) 81. 악성신생물온열료법(惡性新生物溫熱療法)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 도로함] 82. 기타의 악성신생물수술(惡性新生物手術)	3종 1종 2종
상기이외의 수술 (上記以外의 手術)	83. 상기이외의 개두술(開頭術) 84. 상기이외의 개흉술(開胸術) 85. 상기이외의 개복술(開腹術) 86. 충격파(衝擊波)에 의한 체내결석파쇄술(體內結石破碎術)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 도로 함] 87. Fiberscope 또는혈관(血管) Basket Catheter에 의한 뇌, 후두, 흉부, 복부장기수술(腦, 喉頭, 胸部, 腹部臟器手術) [검사, 처치는 포함하지 않음.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2종 2종 1종 2종 1종
신생물근치방사선조사 (新生物根治放射線照射)	88. 신생물근치방사선조사(新生物根治放射線照射) [5,000Rad이상의 조사(照射)로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1종

(비 고)

1. 정신장해(심신상실, 정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수술한 경우

2.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수술한 경우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수술한 경우

4. 치의 보철과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수술한 경우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크 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 수술 등으로 인하여 수술한 경우

※수술분류표상의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의 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 수술분류표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본다.